

충청북도도로개발사업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의안	207
번호	

발의년월일 : 1993. 3. 6

발 의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이유

'88년도에 5,240백만원의 공채를 발행할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였으나 '89년도에 상환완료되어 존치의의가 없는 조례로서 폐지코자 하는것임

주요골자

충청북도가 시행하는 도로개발사업재원조달을 목적으로 '88. 8. 20제정된 조례로서 '89년도에 전액상환완료되어 동조례폐지

첨부

충청북도도로개발사업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1부

충청북도도로개발사업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충청북도도로개발사업지방채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